

의안 번호	733
----------	-----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비가림시설(농막) 등 가설물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 일자 : 2009. 11. 11(수)
- 제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09. 11. 16(월)
- 위원회심사 : 2009. 11. 30(월)

2.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과 관련된 비가림시설(농막) 등 가설물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설물 정비의 적용범위, 정비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가설물 정비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대체가설물 설치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대체가설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09. 9. 14 ~ 10. 5)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규

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농업과 관련된 소규모시설(농막, 원두막, 가설물 등)이 무질서 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 주요 내용은

- 가설물 정비의 적용범위, 정비대상, 정비절차에 관한 사항
- 정비 후 디자인된 대체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사항
- 비가림시설(농막), 원두막, 울타리 등의 대체가설물 설치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용 가설물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현재 시설되어 있는 정비대상 가설물의 유형별 수량, 지원비율, 전체 정비시 대체가설물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비 등 구체적인 정비계획의 설명이 요구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법 제1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별표 4] <개정 2009.8.7>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제2 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버.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깨·우렁이·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